

2020

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

“읍·면·동 공무원 또는 통·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,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
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.

-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.
-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, 위장전입 등 조사
-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
-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



- 아울러,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/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,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행정안전부

